자료 III

일본 판결1

평소 자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표한 인물이라도 불륜행위를 했다고 적시한 사실에 대해서까지 공개를 용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 X주식회사
원　　고 : 甲野太郎
피　　고 : 주식회사 光文社
피　　고 : 乙川一郎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해 별지1 기재의 사죄광고를, 피고주식회사 光文社가 발행하는 「FLASH」지에 별지2 기재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X주식회사에 대해 1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5년 8월 2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甲野太郎에 대해 3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5년 8월 8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4.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2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이 판결은 2항, 3항에 한해 가집행할 수 있다.

사 실

제1. 당사자가 청구한 재판

1. 청구의 취지

(1) 주문 제1항과 동일한 취지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 대해 별지3 기재의 사죄광고를, 주식회사 일본경제신문사가 발행하는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별지4 기재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X주식회사에 대해 3,0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5년 8월 2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甲野太郎에 대해 3,0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5년 8월 8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6) 청구의 취지(3), (4)에 대해 가집행선언

2. 청구의 취지에 대한 피고들의 답변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 사안의 개요 등

본건은 원고들이 피고주식회사 光文社 (이하 「피고 光文社」로 한다) 가 발행하고, 피고 乙川一郎 (이하 「피고 乙川」으로 한다) 이 편집인을 맡고 있는 잡지 「FLASH」(이하 「본건잡지」로 한다) 의 2005년 8월 16일호 (이하 「본건잡지1」로 한다) 및 동월23・30일호 (이하 「본건잡지2」로 하고, 본겁잡지1과 합쳐서 「본건잡지각호」로 한다), 그리고 본건잡지1에 관한 「요미우리(讀賣)신문」 및 「日刊ゲンダイ」(일간현대)에 게재된 신문광고 (이하 「본건신문광고」로 한다) 에서 원고 X주식회사 (이하 「원고회사」로 한다) 및 원고 甲野一郎 (이하 「원고 甲野」로 한다) 의 명예를 훼손한 기재(記載)가 각각 있었다는 이유로 ① 피고들에 대해 명예회복조치로 별지1 기재의 사죄광고를, 피고 광문사가 발행하는 본건잡지에 별지2 기재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하고, 그리고 별지3 기재의 사죄광고를, 주식회사 일본경제신문사가 발행하는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별지4 기재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할 것을 청구하는 동시에 ② 원고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로 피고들에 대해 연대하여 3,000만 엔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05년 8월 2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 소정의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③ 원고 甲野에 대한 3,000만 엔 및 이에 대한 본건잡지2의 발행일인 2005년 8월 8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각각 청구한 사안이다.

이 유

1. 청구원인 (1), (2) 및 (4)에 관해서는, 본건잡지, 요미우리신문 조간의 발행부수 및 일간현대의 발행부수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원인 (1)은 당사자 등, (2)는 본건잡지 각호 및 본건신문광고의 반포, (4)는 본건잡지1의 표지의 기술과 본건잡지각호의 편집 및 본건신문광고의 기술에 대한 결정은 피고 乙川이 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증거 (갑4의 1 내지 3) 에 의하면 본건잡지, 요미우리신문 조간 및 일간현대의 발행부수는 각각 41만8,053부 정도, 1,015만8,949부 정도, 168만2,000부 정도로 인정된다. 본건잡지의 실제 판매부수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정도로 봐야 할 정확한 증거는 없다.

2. 그리고 청구원인 (3) (본건기사 등의 내용의 위법성) 에 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본건기사 등의 기재내용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1) 본건기사1

(가) 원고甲野에게만 관련된 부분

(ㄱ) 본건표지 및 본건기사1 중 별표1(1) 내지 (3), (5) 내지 (7)의 각 기술은, 이를 종합해서 읽으면, 원고 甲野가 丙山花子와의 혼인중에 2명의 상대와 불륜행위를 가졌다는 것을 적시한 것이므로 원고 甲野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ㄴ) 또한 별표1(8), (17)의 각 기술은, 이를 종합해서 읽으면 원고 甲野는 채무를 지고 있는데다가 배우자였던 丙山花子에 대한 발언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적시한 것으로 원고 甲野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이 명백하다.

(나). 원고회사 및 원고 甲野 쌍방에 관한 부분

(ㄱ) 별표1(9) 내지 (14)의 각 기술은, 이를 종합해서 읽으면, 쟉크(ジャック)사가 제3자 할당(割當)증자를 실행했을 때, 원고회사가 설립한 본건투자사업조합이 원고 甲野의 권고 등에 의해 투자가로부터 거액의 금전출자를 받고, 쟉크사가 발행한 신주를 취득하여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투자사업조합에 출자한 「S」를 포함한 투자가의 태반에게 금전을 분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때까지 원고 甲野가 관계하여 이익을 올리지 못했던 투자안건의 투자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S」가 출자한 2억 원을 포함하여 본건사업조합에 투자된 금전을 유용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원고회사 및 원고 甲野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ㄴ) 별표1(15)를 읽어보면 원고 甲野가 어떤 회사의 「매수펀드」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여 투자가들로부터 금전을 모은 것인데, 결국 「매수펀드」가 흐지브지 없어졌을 때, 투자가에게 금전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회사의 신용, 사회적 평가 및 원고 甲野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본건기사1 중, 독점스쿠프② (별표1(10)) 이후의 기술에서는, 원고회사를 원고 甲野가 이끄는 펀드회사라고 기술하는 등 (갑1의3) 투자관계에 관한 기재에서는 원고 甲野 및 원고회사를 혼연일체인 것처럼 기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표1(15)의 기재는, 그 행위주체에 대해 명시적으로 원고회사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완곡하게 원고 甲野의 행위인 동시에 원고회사의 행위라는 것도 적시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ㄷ) 한편 별표1(16), (18) 및 (19)의 기술에 관해 원고들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해부분에서의 적시사실은 원고 甲野가 자신의 태생을 이용하여 투자가들로부터 원고회사가 관계하는 「펀드」에 금전을 투자시키는 것이었으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는 것까지 적시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관련있는 기재 자체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본건신문광고

(가) 원고 甲野에 관한 부분

(ㄱ) 별표2의 본건신문광고는, 원고 甲野가 「白石美帆似의 애인」과 불륜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적시한 것이 명백한 바, 그 문장의 바로 뒤에 「또 レ-スクイ-ン(레이스퀸)도…」라고 기재한 것은 「レ-スクイ-ン」의 애인과도 불륜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완곡하게 적시했다고 할 수 있어, 원고 甲野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음은 명백하다.

(ㄴ) 또 「출자자가 고발! 『甲野펀드에 2억 엔 편취당했다』」는 기재에 대해서는, 「甲野펀드」라는 「펀드」에 출자된 2억 엔을 「甲野펀드」가 무엇인가의 방법으로 편취했다는 것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바, 본건신문광고의 전반(前半)에서는 원고 甲野에 대해 기재하고 있다는 것, 그 명칭에 원고 甲野의 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반드시 정확한 법률관계에 정통하다고는 할 수 없는 본건신문광고의 일반독자에게는, 「甲野펀드」와 원고 甲野가 법적으로는 별개의 인격이라고 해도 그 구별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甲野펀드」란 원고 甲野가 주도적 내지는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펀드」 내지는 원고 甲野 본인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 甲野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음은 명백하

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 원고회사에 관한 부분

한편 본건신문광고의 일반독자 대다수는 반드시 원고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회사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독자에게 있어서도, 본건신문광고에는 원고회사의 명칭은 일체 사용되지 않았고, 또한 앞서 검토한 것들에 의하면 「甲野펀드」란, 본건신문광고의 일반독자는 원고 甲野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甲野펀드」를 원고회사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회사의 주장은 다른 나머지 점에 대해 판단할 것 까지도 없이 이유가 없다.

(3) 본건기사2에 대하여

(가) 본건기사2에 포함되는 별표3(1) 내지 (5)의 각 기술은, 원고 甲野가 4,000만 엔의 채무를 갖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채무에 관한 원고 甲野의 丙山花子에 대한 발언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원고 甲野의 신용 및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것이다.

(나) 별표3(1), (6) 및 (7)의 각 기술은, 원고 甲野가 「A」라는 도내(都內)의 컬처스쿨(カルチャースクール)에 근무하는 여성과 불륜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원고 甲野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다) 별표3(8)의 기술은, 원고 甲野가 허위의 발언(본건기사2의 다른 기재를 종합해서 읽으면 여성관계 내지 금전관계에 관한 허위발언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을 거듭해 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고 甲野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라) 별표3(9)의 기술은,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기에 의하면, 원고 甲野가 자신의 차입금채무의 변제에 丙山花子를 이용하려고 한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며, 원고 甲野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3. 이상과 같은 읽기를 전제로 피고가 주장하는 항변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1) 항변(1) (원고 甲野의 승낙) 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甲野가, 예능인이며 원고 甲野와의 혼인이전부터 자신의 과거사에 관해, 일반인의 감각으로는 공표를 원하지 않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공표해 온 丙山花子와 혼인했던 일, 丙山花子와 혼인을 했을 때도, 丙山花子는 원고 甲野와 알게 된 경위, 즉 프로포즈의 장소 및 언사, 일상생활 등에 관해 그 내용을 계속 공표했다.

원고 甲野 자신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丙山花子의 결혼특집으로 구성된 텔레비 프로에 얼굴은 숨겼다고는 하지만 출연했으며, 피로연의 영상, 원고 甲野 자신의 스피치 내용도 공개한 사실, 혼인 후 丙山花子는 원고 甲野와의 혼인생활에 관해 상세히 공개했고, 이에 대해 원고 甲野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 甲野가 본건기사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이를 수인(受忍)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령 상기 피고들의 주장대로 사실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甲野가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실을 본건각잡지와 같은 소위 사진주간지(공지의 사실이다)에 공개되는 것을 승낙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혼인의 경위, 혼인생활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실과, 그 명예를 훼손하는 불륜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실은,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전자의 사실 공개를 용인했다고 해서, 바로 후자의 사실 공개를 용인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증거(갑5의 1, 2)에 의하면, 원고 甲野는 丙山花子가 원고 甲野의 불륜행위를 포함한 사적사항에 관해 공개하는 것을 일정한 경우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부당하다.

(2) 항변(2) (원고 甲野 및 丙山花子에 관해 기재된 부분에 대한 진실성 내지 오신(誤信)상당성의 항변)에 대하여

(가) 우선 공공성, 공익목적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 보면, 원고 甲野는 연예인이나 공무원 등과 같이 공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다, 본건기사 등의 표현내용 가운데 원고 甲野 및 丙山花子의 혼인생활 등에 관한 부분의 기술 (전기2(1) (가)(ㄱ), 2(1)(가)(ㄴ), 2(2)(가) 및 2(3) 각항) 은 모두 사적생활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애당초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나머지 점에 대해 판단할 것까지도 없이 항변(2)는 이유가 없다.

(나) 진실성 내지 오신상당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피고들은 春野기자가 丙山花子와 수십년동안 교제가 있는 「예능관계자」로부터 본건기사 등에 기재된 내용을 취재했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증거도 있으나(증인 春野), 당해 인물이 누구인지는 본건증거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구체적인 속성이나 丙山花子와의 관계는 전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당해 인물의, 원고 甲野의 불륜행위 및 원고 甲野의 자기채무에 관한 丙山花子에 대한 발언 등 丙山花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식의 유무 내지 정도 등은 전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발언내용이 진실이라든가, 그러한 오신을 갖게 했다는데 대해 상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 피고들은 본건기사에 「A」라고 기재된 원고 甲野의 불륜행위의 상대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취재를 했다고 주장하나, 증인 春野의 진술을 전제하더라도, 「A」라는 인물은 원고 甲野와의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다」고 진술한데 불과하며, 그 진술태도에서 원고 甲野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데 지나지 않는데, 이러한 취재를 가지고 원고 甲野가 「A」와 불륜행위에 이른 것은 진실이라든가, 그러한 오신에 대해서도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丙山花子에 대한 취재에서도, 애당초 증인 春野는 丙山花子에 대해 원고 甲野와 「A」와의 불륜행위에 관해서는 들은 일도 없었으며, 레이스퀸 (レースクイーン)의 「B」와의 불륜행위에 대해서도, 丙山花子가 관련있는 적시사실에 관해 인식한 내용, 경위 등은 하등 구체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객관적인 입증도 없었고, 혼인관계의 일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불륜행위 여부, 혹은 그 양태(樣態)에 대해 반드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취재를 가지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든가 그 오신에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부분에 관해 그 내용이 진실이라든가, 그 오신에 상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들의 항변(2)는 이유가 없다.

(3) 항변(3) (본건투자사업조합 등에서 원고들의 투자사업에 관해 기재된 부분에 대한 진실성 내지 오신상당성의 항변) 에 대하여

(가) 당해부분의 기재가 공공성을 가졌다는 것, 공익목적을 갖고 기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면 관련부분의 기재가 진실성 내지 오신상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피고는 夏川기자가 「S」로부터 본건기사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을 들은데다, 秋山으로부터 「OO투자사업유한회사의 안내(안)」, 원고회사 작성에 관련한 투자펀드에의 「조합가입신청서」의 복사, 골판지 상자에 가득 찬 펀드의 계획서 등 관련서류의 실제적 확인을 한 사실, 본건기사1 중 쟉크사(ジャック社)의 주식에 관해 쓰여진 내용을 확인한 결과에 근거하여

기사를 게재한 것이므로, 관련내용이 진실이든가 진실이라고 오신한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증거도 있다 (을4, 증인夏川).

그러나 「S」라는 인물에 관해서는, 당해인물이 누구인지 본건증거상 명확하지 않으며, 그 속성이나 원고들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발언내용의 신용성을 검토할 수가 없다.

秋山에 관해서도, 해외교류촉진협회 이사 및 재단법인 전일본청소년육성회 이사 겸 사무총장을 자칭하고 있는데, 갑7의1 내지 5에 의하면 그러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秋山은 당 재판소로부터의 두 번에 걸친 소환에도 수긍할만한 이유도 없이 계속 출두하지 않았고, 동인 작성의 진술서(을4)는 도저히 신용할 수 없다는 사실, 양자(兩者)로부터 취재했다는 내용에 대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본건기사 등에 있어서 본건투자사업조합 등에서의 원고들의 투자사업에 관한 기재가 진실이라든가, 그렇게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달리 관련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4) 이상 검토한 바에 의하면, 피고들의 항변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본건기사1은 원고들 양자에 대한 관계에서, 본건신문광고 및 본건기사2는 원고 甲野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손해 및 명예회복조치의 필요 여부

(1)(가) 원고회사에 대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와 같이 투자사업에 관해 기재된 내용은, 투자가로부터의 금전의 편취라고 하는, 투자사업에 관계하는 회사로서 그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키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진실이라든가, 그렇게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 본건잡지1의 발행부수가 41만8053부 정도로 적지않다는 사실, 기타 본건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손해액은 100만 엔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원고 甲野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살펴보면, 본건기사 등의 내용 중, 丙山花子와의 관계가 기재된 내용은 사적인 영역에 관한 사항인데다가, 그 내용에 관해서도 진실성, 오신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 투자사업에 관하여 기재된 내용은 투자가로부터의 금전의 편취라는, 투자사업에 관계하는 인간으로서 그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키는 내용인데다가, 그 내용은 진실이라든가, 그렇게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 본건잡지, 요미우리신문 조간, 일간현대의 발행부수는 각각 41만8,053부 정도, 1,015만8949부 정도, 168만2,000부 정도로 어느 것도 적지 않은 부수라는 사실, 기타 본건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손해액은 본건잡지1에 대해서는 100만 엔, 본건잡지2에 대해서는 100만 엔, 요미우리신문 조간, 일간현대에 게재된 본건신문광고 각각에 대해서는 50만 엔씩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명예회복조치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가), (나)에서 검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정 정도 손해가 위사(慰謝)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명예회복조치로서 본건잡지에 별지1 내용의 사죄광고를 별지2의 조건으로 게재토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나, 별지3 기재의 사죄광고를 「일본경제신문」에 게재하는 것까지 명할 필요는 없다.

5. 결론

이상에 의하면,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들에게 원고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100만 엔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 후일인 2005년 8월 2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원고 甲野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300만 엔 및 이에

대한 본건 잡지2의 발매일인 2005년 8월 8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명예회복조치로서 피고들에 대해 별지1 기재의 사죄광고를, 본건잡지에 별지2 기재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할 것을 각각 청구하는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며, 다른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4 〈생략〉, 별표1~3 〈생략〉

출 처 : 『판례타임즈』 1275호 PP. 223~230

번 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

일본 판결2

잡지에 게재된 코멘트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하여, 코멘트를 한 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례

본소원고(반소피고) : 오리콘주식회사

본소피고(반소원고) : 甲野太郎

손해배상 등 청구, 반소(손해배상) 청구사건

도쿄지법 2006(ワ) 25832호 · 동19(ワ) 2665호

2008. 4. 22. 민12부 판결, 본소 일부인용 · 일부기각

반소(反訴)기각 (항소)

주 문

1. 본소피고(반소원고)는 본소원고(반소피고)에 대해 100만엔 및 이에 대한 2006년 3월 18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본소원고(반소피고)의 다른 나머지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공히 이를 6등분하여 그 5를 본소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그 나머지를 본소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해 가집행할 수 있다.

사실 및 이유

제1. 당사자가 청구한 재판

1. 본소사건

(1) 청구의 취지

(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로 한다) 는 본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로 한다) 에 대해 5,0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6년 3월 18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해 별지 2의 1 기재와 같은 사죄광고를, 별지 2의 2 기재의 요령에 의해 주식회사 인포번(インフォバーン) 발행의 잡지 사이조오(サイゾー) 에 1회 게재하라.

(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 상기 (가)에 대해 가집행선언

(2)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반소(反訴)사건

(1) 청구의 취지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해 1,1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6년 11월 17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해 원고의 홈페이지인 「oricon STYLE」 (http://www.oricon.co.jp/) (이하「원고홈페이지1」로 한다) 에 게재된 별지 3의 (1) 내지 (3) 기재의 각 기사를 모두 삭제하라.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별지4의1 기재와 같은 사죄광고를, 별지 4의 2(1) 기재의 요령에 의해 원고의 홈페이지인 「oricon」 (http://www.oricon.jp/) (이하 「원고홈페이지2」로 한다) 및 원고홈페이지1에 각각 1개월간 게재하라.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해, 별지 4의 1 기재와 같은 사죄광고를, 별지 4의 2(2) 기재의 요령에 의해 원고발행의 잡지 「ORIGINAL CONFIDENCE」에 1회 게재하라.

(마)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바) 가집행선언

(2)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가)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 당사자의 주장 등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음악시장조사 등을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독자적인 조사로 음악 히트차트(ヒットチャート)를 수시로 발표하고 있으며, 피고는 포퓨러 (ポピュラー) 음악 등의 분야에서 평론활동을 하는 저널리스트이다.

2. 본소사건은 주식회사 인포번 발행의 월간지 「사이조오」 2006년 4월호 (이하 「본건잡지 사이조오」로 한다) 에 게재된 『쟈니즈(ジャニーズ)는 초VIP대우?! 사무소와 오리콘의 밀월관계』라는 제하의 기사 (이하 「본건기사 (사이조오)」로 한다) 중에, 별지 5의 1 기재의 피고의 코멘트가 게재되었다.

그런데 그 피고의 코멘트 가운데 별지 5의 2 기재의 각 코멘트 (이하 일괄하는 경우에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로 한다」) 가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했다고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5,000만 엔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06년 3월 18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과 사죄광고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애당초 피고가 「본건기사 (사이조오)」에 관한 취재에 응했다는 것과 「본건코멘트 (사이조오)」가 「본건기사 (사이조오)」에 게재되어 그것에 의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것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항변으로, 「본건코멘트 (사이조오)」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으며,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적시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거나 피고에게 있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다투게 된 사안이다.

더구나 원고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에 의한 명예 및 신용훼손 (이하 「명예훼손」으로 한다) 외에도 주식회사 아사히신문사 발행의 주간지 「AERA」 2003

년 2월 3일호 (이하 「본건잡지 AERA」로 한다) 에 게재된 별지 6의 1 기재의 피고집필과 관련있는 「오리콘(オリコン) 독점 사라진 후 차트는 어떻게 읽나?」 제하의 기사 중 별지 6의 2 기재의 각 문장 (이하 일괄할 경우에는 「본건문장 (AERA)」로 한다.) 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3. 반소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본건본소가 피고의 언론을 억압할 목적으로 나온 현저히 상당성이 없는 것이고, 또한 원고홈페이지1에 게재된 별지 3의 1(1) 내지 (3)기재의 각 기사 중 별지 3의 2 기재의 각 문장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상기 위법제소의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1,100만 엔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06년 11월 17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하고 또한 상기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별지 3의 1(1) 내지 (3)기재의 각 기사의 삭제를 청구하는 한편 상기 위법제소의 불법행위 및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사죄광고를 청구한 사안이다.

제3. 당 법원의 판단

1. 본소사건에 대하여

(1) 청구원인(가)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에 의한 명예훼손)의 (ㄱ) (「본건잡지 (사이조오)」의 발행 및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의 게재), 청구원인(나) (「본건문장 (AERA)」에 의한 명예훼손) 의 (ㄱ) (「본건잡지 (AERA)」의 발행 및 「본건문장 (AERA)」의 게재) 는 모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와 「본건문장 (AERA)」의 관계에 대하여

원고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에 의한 명예훼손 (청구원인(가)) 과 「본건문장 (AERA)」에 의한 명예훼손 (청구원인(나)) 은 일련(一連) 또는 단일의 불법행위로 동일한 소송물을 구성한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애당초 「본건코멘트 (사이조오)」는 인포번 발행의 「본건잡지 (사이조오)」에 게재된 것으로, 「본건문장 (AERA)」이 게재된 아사히신문사 발행의 「본건잡지 (AERA)」와는 매체를 달리하고 있다. 더욱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에 의한 명예훼손은 2006년 3월에 있은데 반해, 「본건문장 (AERA)」에 의한 명예훼손은 2003년 1월에 일어나, 그 시기에 3년여의 간격이 있다. 또한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에 의한 명예훼손은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에 관한 취재에 응한다는 양태(様態)로 이루어진데 반해 「본건문장 (AERA)」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고 스스로가 기사를 집필하는 양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행위양태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그 표현내용을 보더라도,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에는 공예약 문제, 통계수법의 공개성 문제에 관한 지적이 있는데 반해, 「본건문장 (AERA)」에는 그런 취지의 지적이 없는가 하면, 「본건문장 (AERA)」에는 레코드회사가 원고발행의 잡지에 광고를 냈다거나 원고의 매상조사협력점에서 CD를 대량구입하는 문제 등에 관한 지적이 있는 반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와 「본건문장 (AERA)」는 그 표현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 와 「본건문장 (AERA)」는 원고의 음악히트차트의 신용성에 의심을 제기한다는 점에서는 궤(軌)를 같이 하나, 그 이외의 점에서는 공통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잡지에 게재된 복수의 기사가 동일인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잡지 및 그 게재시기가 다르면, 그 기사에 의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는 별개로 발생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와 「본건문장 (AERA)」는 그 내용과 양태도 다르므로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와 「본건문장 (AERA)」에 의한 명예훼손을 일련 또는 단일의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고, 양자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원고는 「본건문장 (AERA)」에 의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독립된 소송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해 검토한다. (「본건문장 (AERA)」에 의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

(3) 사회적 평가의 저하에 대하여

(가)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에 대하여

(ㄱ)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읽기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은, 「오리콘(オリコン)은 예약매수도 카운트에 넣고 있다. 예약만을 넣어 두었다가 후에 해약하는 공예약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 원고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은 「공예약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공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기를 기준으로 할 때,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은 공예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단정한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높다고 기술한데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가 없다.

한편 피고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논평이라고 주장하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증거 등을 가지고 그 존재여부의 결정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논평은 아니고 사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도 채용할 수가 없다.

(ㄴ)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유무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기로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을 읽었을 경우, 독자는 원고의 음악 히트 차트의 매상매수에는 예약만 넣어놓고 후에 해약하는 공예약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통계학적인 정확성, 신용성이 낮다는 인상을 받는다.

따라서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은 「본건기사 (사이조오)」의 다른 부분과는 관계없이 그것만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

(나)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 에 대하여

(ㄱ)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 의 읽기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는 「오리콘의 숫자는 레코드회사에 의해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원고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는 「오리콘의 숫자는 오리콘 자신 또는 레코드회사에 의해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기를 기준으로 하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는 레코드회사원의 말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레코드회사에 의한 조작에 관해 기술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는 「조작가능」이라는 가능성을 기술한데 불과하므로 논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기를 기준으로 하면 「조작가능」이란 것은 어떠한 가능성을 기술한 것이 아니고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술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도 채용할 수가 없다.

또 피고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는 「레코드회사원이 '오리콘의 숫자는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자는, 레코드회사원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레코드회사원이 말한 내용 그 자체, 즉 「오리콘의 숫자는 어느 정

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식한다고 하겠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도 채용할 수 없다.

(ㄴ)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유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를 읽었을 경우 독자는 원고의 음악히트차트는 레코드회사에 의해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신용성이 낮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므로,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는 「본건기사 (사이조오)」의 다른 부분과는 관계없이 그것만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

(다)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③)」에 대하여

(ㄱ)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③)」의 읽기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③)」는, 「오리콘은 불가사의한 단체」라는 논평, 「오리콘은 그 통계수법에 관해 〈오리콘의 독자적인 통계수법〉이라고 주장한다」고 한 사실, 「오리콘은 그 통계수법을 거의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한 사실, 「보통의 통계조사는 그 수법을 상세하게 공개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할 여지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공개된 데이터는 통계학적인 신용도가 낮다는 것을 자기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논평을 각각 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원고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③)」은 「오리콘이 발표하고 있는 음악히트차트 분야에서, 보통의 통계조사는 그 수법을 상세하게 공개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게끔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 및 「오리콘, "오리콘 독자의 통계수법이다"라고 주장, 당해업계에서 같은 취지의 차트를 공개하고 있는 타사 (즉 사운드스캔=サウンドスキャン) 와 비교하면서 그 통계수법을 거의 밝히지 않는 불가사의한 단체」라는 사실을 각각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사실적시라고 주장하는 상기 문장 중, 「보통의 통계조사는 그 수법을 상세하게 공개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할 여지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부분 및 「오리콘은 불가사의한 단체」라는 부분은 모두 증거 등에 의한 증명이 어려운 비평이나 논의에 해당하므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논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 「오리콘은 그 통계수법을 거의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적시 부분은 「당해 업계에서 같은 취지의 차트를 공개하고 있는 타사 (즉 사운드스캔)」와 비교하여」 기술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는 이러한 동업타사와의 비교의 취지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③)」의 전제인 「일본에는 오랫동안 오리콘 외에 히트차트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계학적 정확도가 과대평가 되기 쉽다」는 코멘트 부분을 종합해서 읽으면, 이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독자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한 전제코멘트를 읽는 것 만으로는 원고 이외의 음악히트차트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없을 것이며, 하물며 그것이 사운드스캔일 것이라는 인식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즉 일반독자는 이와 같은 동업타사와의 비교 취지를 읽어낼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③)」는, 「오리콘이 그 통계수법을 거의 밝히지 않고 있다」는 논평을 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계수법을 거의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증거 등을 가지고 그 존재여부를 밝힐 수 있는 사항으로, 논평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주장도 채용할 수가 없다.

(ㄴ)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유무

a. 우선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③)」 중 「오리콘은 불가사의한 단체」라는 논평 및 「오리콘은 그 통계수법에 관해 〈오리콘의 독자적인 통계수법〉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은 모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다.

b. 한편 「오리콘은 그 통계수법을 거의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및 「보통의 통계조사는 그 수법을 상세하게 공개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할 여지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공개된 데이터는 통계학적인 신용도가 낮다는 것을 자기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논평은, 전자의 적시사실을 전제로 하여 후자의 논평을 한 것이므로, 일반독자는 원고의 음악 히트차트는 그 통계수법을 거의 밝히지 않기 때문에 통계학적인 신용성이 낮다는 인상을 받는다. 따라서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③)」의 상기 부분은 「본건기사 (사이조오)」의 다른 부분과는 관계없이 그것만으로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

(4) 피고가 취재에 응한 사실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잡지기사의 편집권은, 당해잡지의 출판사에 있으며, 출판사는 그의 책임과 권한하에 갖가지 취재를 한 후 취사선택하여 기사내용을 구성, 이를 게재한다. 또한 불특정다수의 독자에게 배포되는 잡지의 출판사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특정정보원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정확성의 확보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출판사로부터의 취재에 응한 자는, 출판사가 독자적인 입증취재나 편집작업을 한 후 기사를 게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통상이며, 자기의 코멘트 내용이 그대로의 형태로 게재되는 것을 예견하지 않는 것이 또한 통상이다. 그러므로 출판사로부터의 취재에 응한 자의 코멘트 내용이 그대로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자가 취재에 응한 사실과 그 코멘트 내용이 그대로의 형태로 게재되어 그것으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사실과의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출판사로부터의 취재에 응한 자가, 자기의 코멘트 내용이 그대로의 형태로 게재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 또는 자기의 코멘트 내용이 그대로의 형태로 게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예측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굳이 당해출판사에 대해 코멘트를 제공한 경우는, 그 자가 출판사로부터의 취재에 응한 사실과 그 코멘트 내용이 그대로의 형태로 게재되어, 그것에 의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사실과의 사이에는 예외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이를 본건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는 본건본소제기 전인 2006년 6월 30일 원고의 대리인 변호사로부터의 통지서(甲4의1)에 대해 「2006년 3월 6일 甲野는 〈사이조오〉 편집부의 甲田夏夫로부터 전화로 코멘트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甲野가 전화로 甲田씨의 질문에 답하고, 甲田씨가 甲野의 발언을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코멘트 부분은 메일로 甲野에게 다시 보낸 뒤 수정・편집이 가해지고 약간의 의견교환을 한 후 게재하는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라고 FAX문서로 회답하고 있다(甲5). 이 FAX문서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기사 (사이조오)」의 편집자가 작성한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의 원안에 직접 수정 및 편집을 한 후 편집자와의 사이에 약간의 의견교환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의 코멘트인 「본건코멘트 (사이조오)」가 그대로의 형태로 「본건기사 (사이조오)」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취재에 응한 사실과 「본건코멘트 (사이조오)」가 「본건기사 (사이조오)」에 게재되어 그것에 의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사실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이 점에 관해 피고는, 상기 FAX 문서에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나 이를 채용할 수가 없다.

(5) 진실성, 오신상당성, 공정한 논평의 항변에 대하여

(가) 사실의 공공성, 목적의 공익성에 대하여

항변(가)(사실의 공공성, 목적의 공익성)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진실성, 오신상당성에 대하여

(ㄱ)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적시사실 (「오리콘은 예약매수도 카운트에 포함시키고 있다. 예약에만 포함시켰다가 뒤에 해약하는 공예약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에 대하여

피고는 항변(나)(ㄱ)a 내지 f의 근거를 들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어느것도 그것에 의해서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a. 대형 레코드회사 사원에 대한 취재 결과

피고 본인은 복수의 대형 레코드회사 사원들이 피고의 취재에 대해, 원고의 음악 히트차트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원고의 매상조사협력점에서의 CD의 공예약을 넣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어느 협력점에서 어느 CD에 대해 공예약을 넣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레코드회사 사원들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상기 대형레코드회사 사원들에 대한 취재결과는, 그러한 취재결과의 존재여부와는 관계없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적시사실이 진실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b. 乙山에 대한 취재 결과

피고 본인은, 당시 원고의 광고기획부에 소속된 乙山이, 피고의 취재에 응했을 때 원고의 음악 히트차트의 매상매수에 대해 '예약도 카운트에 들어갑니다'라고 진술했으며, 乙2의 1, 2, 乙4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진술면에서 일관성이 없고, 또한 乙山이 '예약도 카운트에 들어간다'고 진술했다면, 그 후에 질문사항을 기재한 FAX 문서를 원고에게 송부할 때에는, 그 점에 관한 질문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송부한 FAX 문서(을13)에는 그러한 질문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예약도 카운트에 들어간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c. 에스・아이・비 (エス・アイ・ピ-)사에 대한 취재 결과

피고본인은, 사운드스캔을 운영하는 에스・아이・비사의 담당자가 피고의 취재에 대해 구체적인 악곡명, 수치 등을 제시하면서 사운드스캔의 추정매상매수와 원고의 추정매상매수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원고의 추정매상매수에는 예약매수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며, 乙12의 1, 2에도 이에 따른 기재가 있다. 그러나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에스・아이・비사의 일방적인 비판의 언사를 가지고 그것을 바로 진실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에스・아이・비사에 대한 취재결과는, 그 존재여부와는 관계없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적시사실이 진실이라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d. 丙川에 대한 취재 결과

피고 본인은, 당시 원고의 홍보기획부장인 丙川이 피고의 취재에 응했을 때, 피고의 질문에 부정할 것은 명확하게 부정하면서도 원고의 매상매수에 예약매수가 들어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본인의 진술에 의해서도, 丙川은 원고의 매상매수에 예약매수가 들어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므로 丙川에 대한 취재결과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적시사실이 진실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e. 피고소송대리인에 의한 조사결과

乙6 및 7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은 본건본소가 제기된 후에 원고의 매상조사협력점 5점 (A점 내지 E점) 의 점장에게 청취조사를 했으며, 이 조사보고서에는 그 중 2점 (B점 및 E점) 의 점장이 예약매수를 매상매수에 넣어 원고에게 매상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기재가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乙6 및 7의 청취조사보고서는, 본건본소의

제기 후에 피고소송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신용성에는 의문이 있다고 하지않을 수 없으며, 애당초 조사대상인 A점 내지 E점이 원고의 매상조사협력점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 이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기술내용 생략) 그 청취조사의 결과 자체도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적시사실이 진실이라는 근거로는 되지 않는다.

f. 丁原에 의한 취재결과

乙8 (저널리스트 丁原가 작성한 진술서) 에는, 원고의 매상조사협력점의 전 종업원이 丁原의 취재에 대해, 원고의 매상조사협력점이 예약매수를 매상매수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매상보고를 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乙8에는 丁原이 취재했다는 전 종업원이, 어느 매상조사협력점에서, 어느 CD에 대해 예약매수를 매상매수에 포함시켜 매상보고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그 전 종업원이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 乙8에 의하면, 그 전 종업원은 1988년경의 종업원으로, 당시는 POS데이터조차 보급되지 않은 시기로 추측되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발표가 있었던 2006년 3월 당시의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상기 丁原에 의한 취재결과는,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적시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a, c 및 d의 취재결과는, 상기의 설시와 같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적시사실이 진실이라는 근거로서 불충분할 뿐 아니라 그 취재방법도 피고 자신이 그 부정확성을 자인하는 전화취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취재시기도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발표시부터 3년 이상 더 이전으로 상당히 오래전이었다. 따라서 피고가 상기 a 내지 d의 취재결과에 근거하여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①)」의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의 적시사실 (「오리콘의 숫자는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 에 대하여

a. 우선 상기 적시사실은, 단순히 원리적으로, 「매상매수의 숫자는 조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오리콘의 숫자를 조작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를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하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각 근거에 대하여 검토한다.

b. 우선, 항변(나)(ㄴ)a (대형레코드회사 사원에 대한 취재결과), 항변(나)(ㄴ)b (피고소송대리인에 의한 조사결과) 및 항변(나)(ㄴ)c (丁原에 의한 취재결과) 에 대해서는, 이것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의 적시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기 설시와 같다.

또한 항변(나)(ㄴ)d의 乙16 (웹사이트상의 기사 복사) 에는, 레코드회사의 전 사장(戊田)이 원고의 음악 히트차트의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레코드회사가 레코드 등의 대량구입을 했다고 말한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그 戊田의 말에는 매상조사협력점, 레코드 등의 대량구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다, 애당초 戊田이 대량구입했다는 시기는 1970~80년대이며, 또한 레코드회사가 원고의 음악 히트차트의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레코드 등의 대량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매상조사협력점이 어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본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乙山의 증언도 단순한 풍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상과 같이 피고가 제시하는 상기 각 근거는 모두가 박약하다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의 적시사실 (「오리콘의 숫자는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 을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c. 또한 피고는 상기 a의 취재결과 (대형레코드회사 사원에 대한 취재결과) 에 근거하여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의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으므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취재결과는 상기 설시와 같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의 적시사실이 진실이라는 근거로는 불충분하며, 또한 그 취재시기도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의 발표시로부터 3년 이상이나 이전이어서 상당한 과거이다. 따라서 피고가 상기 a의 취재결과 (대형레코드회사 사원에 대한 취재결과) 에 근거하여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②)」의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ㄷ)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③)」의 적시사실 (「오리콘은 그 통계수법을 거의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에 대하여

甲8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 (「ORIGINAL CONFIDENCE」・2003년 7월 7일호) 지상에 「조사협력점 일람」, 「POS데일리데이터 & FAX 데이터 제공점」, 「오리콘차트는 하기 SHOP의 데이터 제공에 근거하여 집계되고 있습니다」라는 기재아래, 원고의 매상조사협력점의 명칭 (단 전부는 아니다.) 및 합계수를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③)」의 적시사실 중 원고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키는 부분 (「오리콘은 그 통계수법을 거의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을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공정한 논평에 대하여

「본건코멘트 (사이조오③)」중, 「보통의 통계조사는 그 수법을 상세하게 공개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 공개되는 데이터는 통계학적인 신용도가 낮다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부분은, 그 전제사실 (「오리콘은 그 통계수법을 거의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과 더불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논평에 해당하는 바, 상기 전제사실은 상기 설시와 같이 진실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며, 또한 피고에게 있어서는 상기 전제사실을 진실로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입증도 없다. 따라서 상기논평은 공정한 논평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손해에 대하여

「본건잡지 (사이조오)」는 전국적으로 배포되어 다수의 독자를 갖는 월간지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다. 또한 원고가 전개하는 사업은 음악 히트차트에 관련된 것이 그 중핵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원고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록상 살필 수 없고, 원고 자신도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명예회복을 꾀하고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본건 명예훼손에 의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100만 엔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7) 사죄광고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상기의 설시와 같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가 원고의 음악 히트차트 관련사업에 현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록상으로는 살필 수 없으며, 또한 원고는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나 홈페이지를 통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원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건코멘트 (사이조오)」에 대한 반론을 올려 자신의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상기의 금전적 배상에 더해 사죄광고를 명할 필요는 인정될 수 없다.

2. 반소(反訴)사건에 대하여

(1) 위법제소에 대하여

(가) 원고가 「본건잡지 (사이조오)」의 발행자나 「본건기사 (사이조오)」의 편집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고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가지고, 본소의 제기를 위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소송에서는 손해액이 비교적 고액으로 설정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원고가

5,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본소의 제기를 위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더욱이 본건사건에 있어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의 「본건코멘트 (사이조오)」는 원고의 명예를 위법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제기는 이를 위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라) 또한 원고가 사전교섭이나 대항언론을 하지 않고 본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본소의 제기를 위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마) 그러므로 위법제소의 불법행위에 근거한 피고의 각 청구는 손해액이나 사죄광고의 가부 등의 문제를 검토할 것 까지도 없이 이유가 없다.

(2) 명예훼손에 대하여

(가) 본건문장(원고HP)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명백한 사실오인에 근거하여 저널리즘의 이름 아래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통계수법으로 근거없는 중상을, 장기간에 걸쳐 계속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乙5의 1 내지 3에 의하면, 상기의 적시사실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말이 나지 않았다는 전제를 명확하게 밝히고 했기 때문에, 일반독자는 그 적시사실이 어디까지나 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문장(원고HP)은 피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그러므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근거한 피고의 각 청구는 기사 삭제의 필요 여부나 사죄광고의 필요 여부 등의 문제를 검토할 것 까지도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어

이상과 같이 원고의 본소청구는 1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6년 3월 18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의 지불 한도에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다른 나머지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또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전부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64조 본문, 61조를, 가집행의 선언에 관해서는 동법 259조 1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다음의 별지(別紙) 기록은 모두 생략한다.〉

▲별지1의1 원고소송대리인 목록 ▲별지1의2 피고소송대리인 목록 ▲별지2의1 사죄광고 ▲별지2의2 사죄광고 게재조건 ▲별지3의1(1)~(3) ▲별지3의2 ▲별지4의1 사죄광고 ▲별지4의2 ▲별지5의1, 2 ▲별지6의1, 2.

출 처 : 『판례시보』 2010호 PP. 78~92

번 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